서대구센트럴자이 입주자모집공고(안)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서대구센트럴자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sdgcentral-xi.co.kr) 및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또한, 당첨자발표 이후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내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해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의 청약접수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과 3항에 의거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개별 통보 및 예약 예정입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일에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에 한해 최대 1인까지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공급계약체결일에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불가 / 대리인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전신소독기를 통한 전신소독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관람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1661-5523)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8.27.**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7.)**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3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2020.02.27.)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순위 청약 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단, 본 아파트는 승인권자(대구광역시 서구청)의 요청에 따라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dgcentral-xi.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호(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전매 제한기간 등**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 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거래의 신고**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 2020.03.13.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는 공급금액 6억이상 아파트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동·호 발표)	당첨자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일정	2020년 08월 27일(목)	2020년 09월 07일(월)	2020년 09월 08일(화)	2020년 09월 09일(수)	2020년 09월 15일(화)	2020년 09월 17일(목) ~ 2020년 09월 23일(수)	2020년 10월 05일(월) ~ 2020년 10월 08일(목)
방법 (일시)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 분양홈페이지 (http://sdgcentral-xi.co.kr)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방문 검수 -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 ※ 구비서류는 당사 견본주택 및 분양홈페이지 참조 ※ 검수접수 과열 시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당사 견본주택 방문하여 계약체결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우선합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 건축주택과-30778호(2020.08.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140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6~33층, 13개동 **총 1,526세대(임대 96세대, 조합원분 359세대, 보류지 포함) 중 일반분양 1,0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462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08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08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13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3세대) 포함]

■ 입주예정일 : 2023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공동주택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2020001012	01	059.8299A	59A	59.8299	22.3004	82.1303	38.7947	120.9250	27.8755	286	29	29	57	9	124	162	10
		02	059.9497B	59B	59.9497	23.2126	83.1623	38.8724	122.0347	27.9313	84	8	8	17	3	36	48	3
		03	059.8942C	59C	59.8942	22.7711	82.6653	38.8365	121.5018	27.9055	18	2	2	4	1	9	9	1
		04	074.9325A	74A	74.9325	21.4584	96.3909	48.5876	144.9785	34.9120	247	25	25	49	7	106	141	11
		05	074.7862B	74B	74.7862	26.5716	101.3578	48.4928	149.8506	34.8439	51	5	5	10	2	22	29	4
		06	084.9710A	84A	84.9710	26.3099	111.2809	55.0967	166.3776	39.5891	247	25	25	49	7	106	141	11
		07	084.9537B	84B	84.9537	26.6737	111.6274	55.0855	166.7129	39.5811	137	14	14	27	4	59	78	5
		08	099.8644	99	99.8644	26.1978	126.0622	64.7539	190.8161	46.5282	1	-	-	-	-	-	1	-
	합계										1,071	108	108	213	33	462	609	4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	동호 (라인별)	공급 세대 수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기간
										2021.04.15	2021.08.16	2022.01.17	2022.06.15	2022.10.17	2023.02.15	
59A	102동1,2호 109동1,2호 111동1,2,3,4호	159	1층	3	132,640,200	213,859,800	-	346,50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34,650,000	103,950,000
			2층	4	135,549,500	218,550,500	-	354,10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35,410,000	106,230,000
			3-4층	15	138,458,800	223,241,200	-	361,70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36,170,000	108,510,000
			5-6층	16	141,368,000	227,932,000	-	369,30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110,790,000
			7-15층	61	144,277,300	232,622,700	-	376,900,000	37,690,000	37,690,000	37,690,000	37,690,000	37,690,000	37,690,000	37,690,000	113,070,000
			16-33층	60	147,186,600	237,313,400	-	384,50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38,450,000	115,350,000
	102동4호 107동1,2호 108동3호 109동4호	127	1층	3	130,458,200	210,341,800	-	340,80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34,080,000	102,240,000
			2층	5	133,367,500	215,032,500	-	348,400,000	34,840,000	34,840,000	34,840,000	34,840,000	34,840,000	34,840,000	34,840,000	104,520,000
			3-4층	10	136,276,800	219,723,200	-	356,0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106,800,000
			5-6층	10	139,186,100	224,413,900	-	363,600,000	36,360,000	36,360,000	36,360,000	36,360,000	36,360,000	36,360,000	36,360,000	109,080,000
			7-15층	35	142,095,400	229,104,600	-	371,20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111,360,000
			16-33층	64	145,004,600	233,795,400	-	378,80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113,640,000
59B	102동3호 108동2호 109동3호	84	1층	1	131,491,800	212,008,200	-	343,500,000	34,350,000	34,350,000	34,350,000	34,350,000	34,350,000	34,350,000	34,350,000	103,050,000
			2층	3	134,401,100	216,698,900	-	351,100,000	35,110,000	35,110,000	35,110,000	35,110,000	35,110,000	35,110,000	35,110,000	105,330,000
			3-4층	6	137,310,400	221,389,600	-	358,700,000	35,870,000	35,870,000	35,870,000	35,870,000	35,870,000	35,870,000	35,870,000	107,610,000
			5-6층	6	140,219,600	226,080,400	-	366,30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109,890,000
			7-15층	27	143,128,900	230,771,100	-	373,90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37,390,000	112,170,000
			16-33층	41	146,038,200	235,461,800	-	381,500,000	38,150,000	38,150,000	38,150,000	38,150,000	38,150,000	38,150,000	38,150,000	114,450,000
59C	108동1호	18	1층	1	135,090,100	217,809,900	-	352,900,000	35,290,000	35,290,000	35,290,000	35,290,000	35,290,000	35,290,000	35,290,000	105,870,000
			2층	1	137,999,400	222,500,600	-	360,500,000	36,050,000	36,050,000	36,050,000	36,050,000	36,050,000	36,050,000	36,050,000	108,150,000
			3-4층	2	140,908,700	227,191,300	-	368,10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110,430,000
			5-6층	2	143,818,000	231,882,000	-	375,70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112,710,000
			7-15층	7	146,727,200	236,572,800	-	383,300,000	38,330,000	38,330,000	38,330,000	38,330,000	38,330,000	38,330,000	38,330,000	114,990,000
			16-27층	5	149,636,500	241,263,500	-	390,900,000	39,090,000	39,090,000	39,090,000	39,090,000	39,090,000	39,090,000	39,090,000	117,270,000
74A	112동 1,2,3,4,5,6호	92	2층	6	158,976,800	256,323,200	-	415,30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124,590,000
			3-4층	12	162,422,000	261,878,000	-	424,30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127,290,000
			5-6층	12	165,867,200	267,432,800	-	433,30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129,990,000
			7-15층	51	169,312,400	272,987,600	-	442,30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44,230,000	132,690,000
			16~17층	11	172,757,600	278,542,400	-	451,30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135,390,000
	107동3,4호 108동4,5호 109동5,6호	155	1층	5	152,928,600	246,571,400	-	399,50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39,950,000	119,850,000
			2층	6	156,373,800	252,126,200	-	408,500,000	40,850,000	40,850,000	40,850,000	40,850,000	40,850,000	40,850,000	40,850,000	122,550,000
			3-4층	12	159,819,000	257,681,000	-	417,50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125,250,000
			5-6층	12	163,264,200	263,235,800	-	426,50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127,950,000
			7-15층	51	166,709,400	268,790,600	-	435,50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130,650,000
			16-29층	69	170,154,600	274,345,400	-	444,50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133,350,000
74B	110동1,2,3,4호	51	2층	4	166,211,800	267,988,200	-	434,200,000	43,420,000	43,420,000	43,420,000	43,420,000	43,420,000	43,420,000	43,420,000	130,260,000

			3-4층	8	169,657,000	273,543,000	-	443,20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132,960,000
			5-6층	8	173,102,200	279,097,800	-	452,20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135,660,000
			7-15층	29	176,547,400	284,652,600	-	461,200,000	46,120,000	46,120,000	46,120,000	46,120,000	46,120,000	46,120,000	46,120,000	138,360,000
			16층	2	179,992,600	290,207,400	-	470,200,000	47,020,000	47,020,000	47,020,000	47,020,000	47,020,000	47,020,000	47,020,000	141,060,000
84A	101동1호 103동1호 104동1호 105동1호 106동1호	90	1층	2	178,920,700	288,479,300	-	467,400,000	46,740,000	46,740,000	46,740,000	46,740,000	46,740,000	46,740,000	46,740,000	140,220,000
			2층	5	182,901,800	294,898,200	-	477,80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47,780,000	143,340,000
			3-4층	10	186,883,000	301,317,000	-	488,20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146,460,000
			5-6층	9	190,864,100	307,735,900	-	498,600,000	49,860,000	49,860,000	49,860,000	49,860,000	49,860,000	49,860,000	49,860,000	149,580,000
			7-15층	25	194,845,200	314,154,800	-	509,0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52,700,000
			16-32층	39	198,826,300	320,573,700	-	519,40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155,820,000
	102동5,6호 104동3,4호 105동3,4호 106동3,4,5호	157	1층	8	175,934,900	283,665,100	-	459,600,000	45,960,000	45,960,000	45,960,000	45,960,000	45,960,000	45,960,000	45,960,000	137,880,000
			2층	9	179,916,000	290,084,000	-	470,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3-4층	18	183,897,100	296,502,900	-	480,400,000	48,040,000	48,040,000	48,040,000	48,040,000	48,040,000	48,040,000	48,040,000	144,120,000
			5-6층	17	187,878,200	302,921,800	-	490,800,000	49,080,000	49,080,000	49,080,000	49,080,000	49,080,000	49,080,000	49,080,000	147,240,000
			7-15층	37	191,859,400	309,340,600	-	501,20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50,120,000	150,360,000
			16-32층	68	195,840,500	315,759,500	-	511,60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153,480,000
84B	101동2호 103동2호 104동2호 105동2호 106동2호	137	1층	3	175,552,100	283,047,900	-	458,60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45,860,000	137,580,000
			2층	5	179,533,200	289,466,800	-	469,0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40,700,000
			3-4층	10	183,514,300	295,885,700	-	479,40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143,820,000
			5-6층	9	187,495,400	302,304,600	-	489,80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48,980,000	146,940,000
			7-15층	41	191,476,600	308,723,400	-	500,200,000	50,020,000	50,020,000	50,020,000	50,020,000	50,020,000	50,020,000	50,020,000	150,060,000
			16-33층	69	195,457,700	315,142,300	-	510,600,000	51,060,000	51,060,000	51,060,000	51,060,000	51,060,000	51,060,000	51,060,000	153,180,000
99	103동3호	1	27층	1	224,167,700	328,574,818	32,857,482	585,600,000	58,560,000	58,560,000	58,560,000	58,560,000	58,560,000	58,560,000	58,560,000	175,680,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호수로 당첨자를 선정함.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8299A	059.9497B	059.8942C	074.9325A	074.7862B	084.9710A	084.9537B	099.8644
약식표기 주택형	59A	59B	59C	74A	74B	84A	84B	99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별도 안내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단, 이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계약금 완납 시 대출 실행 가능)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방법	특별공급 유형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은행창구 접수 불가)	기관추천	①해당 관계기관에 주택형별 신청 ②해당 관계기관에서 우선순위 선정 ③사업주체 추천명단 통보 ④해당 관계기관에 선정된 신청자 인터넷 청약 접수
	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인터넷 청약 접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에 따라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의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

※ 인터넷 청약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고, 청약접수일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관련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함.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분		59A	59B	59C	74A	74B	84A	84B	99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5	4	1	13	3	13	6	-	55
	국가유공자 등(보훈처 추천)	5	1	1	4	1	4	3	-	1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5	1	-	4	1	4	3	-	18
	장기복무제대군인	2	1	-	2	-	2	1	-	8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2	1	-	2	-	2	1	-	8

	소계		29	8	2	25	5	25	14	-	10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9	8	2	25	5	25	14	-	108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43	13	3	37	8	37	21	-	162
		일반공급(25%)	14	4	1	12	2	12	6	-	51
	소계		57	17	4	49	10	49	27	-	21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9	3	1	7	2	7	4	-	33
합계			124	36	9	106	22	106	59	-	46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 요건/ 자격 제한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 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500만원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기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등(보훈처 추천),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공급 세대수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	• 공급 세대수 : 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함.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주택에 한정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의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급 세대수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20% 범위 내.

• 당첨자 선정 방법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① **제1순위 :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 기간 중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소득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없는 경우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① 재직증명서(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 해당 직장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①, ② 해당 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 직 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비치

※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7자리 포함)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함.
※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단,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제외)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공급 세대수 : 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3% 범위 내.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신청자격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1순위	85㎡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하며,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85㎡초과	추첨제 1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추첨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만19세 이상인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이상 접수하지 않음)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점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으로 청약접수 함.
	추첨제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6개월 이전(2020.02.27.) 해당지역(대구광역시)으로 전입 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됨. (2018.01.02.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됨.** **※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 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당 지자체의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 등) 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 - 접수 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접수 결과 미달 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단, 정당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경우의 특례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09월0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하여야 함. 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수도권 :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Ⅲ.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2020년 09월 07일(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국민은행가입자 포함
일반공급	1순위	**2020년 09월 08일(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국민은행가입자 포함
	2순위	**2020년 09월 09일(수)** 08:00~17:30	

※ 스마트폰앱 :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의 청약접수도 인터넷(청약홈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동안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Ⅳ.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입주자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공통 유의사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 **2020년 09월 15일(화)**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2020년 09월 17일(목) ~ 2020년 09월 23일(수)** (10:00~16:00) • 계약기간 **2020년 10월 05일(월) ~ 2020년 10월 08일(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대구 달서구 두류동 135-4) 2층**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은행(일반공급)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년 09월 15일(화) ~ 2020년 09월 24일(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년 09월 15일(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Ⅴ.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자격확인서류 제출 안내

구분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자격확인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0년 09월 17일(목) ~ 2020년 09월 23일(수) 7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대구 달서구 두류동 135-4)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후 별도안내 예정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2005. 06. 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내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게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함.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O		서약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 서류를 서약서로 대체)
	O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신청자와의 관계
	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필수 제출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간 및 기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O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O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O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기본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자녀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O		소득증빙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기본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O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자녀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자녀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확약서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체결 일정 안내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0년 10월 05일(월) ~ 2020년 10월 08일(목) 4일간**,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대구 달서구 두류동 135-4)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O	자격확인서류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O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계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O		신분증	계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주택 소명서류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무허가건물확인서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공시가격 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O	기타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O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 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봄.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02.21.부터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계약금 납부계좌	101동 / 104동 / 107동 / 108동 / 109동 / 111동	하나은행	231-910011-53105	원대동3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에스건설(주)
	102동 / 103동 / 105동 / 106동 / 110동 / 112동	농협은행	301-0276-4456-31	
아파트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101동 / 104동 / 107동 / 108동 / 109동 / 111동	하나은행	231-910011-52405	원대동3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지에스건설(주)
	102동 / 103동 / 105동 / 106동 / 110동 / 112동	농협은행	301-0276-4458-11	

※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체결 시 별도의 세대별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부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입금된 공급대금은 상기 중도금, 잔금 계좌로 자동 입금처리 됨.

※ 공급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2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공급계약체결 시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 (무통장 입금증은 공급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임.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협약 조건(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함.(이자후불제 기간은 최초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임)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VI.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무상 제공하며 비확장 선택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 시공을 요구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일괄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함.
- 발코니 확장 시 관련 법령 상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스타일 옵션 품목(유상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품목	설치위치	금액	납부금액 및 일정			비고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1.04.15	입주지정기간	
59A	중문	현관	1,950,000	195,000	390,000	1,365,000	
	포세린 바닥타일	거실, 주방	1,040,000	104,000	208,000	728,000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1,230,000	123,000	246,000	861,000	
	마감업그레이드	시트패널+간접조명+우물천장 간접조명 +거실, 안방, 침실, 주방, 욕실 특화전등	4,810,000	481,000	962,000	3,367,000	
59B	중문	현관	1,950,000	195,000	390,000	1,365,000	
	포세린 바닥타일	거실, 주방	1,080,000	108,000	216,000	756,000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1,400,000	140,000	280,000	980,000	
	마감업그레이드	시트패널+간접조명+우물천장 간접조명 +거실, 안방, 침실, 주방, 욕실 특화전등	4,720,000	472,000	944,000	3,304,000	
59C	중문	현관	1,950,000	195,000	390,000	1,365,000	
	포세린 바닥타일	거실, 주방	1,110,000	111,000	222,000	777,000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1,530,000	153,000	306,000	1,071,000	
	마감업그레이드	시트패널+간접조명+우물천장 간접조명 +거실, 안방, 침실, 주방, 욕실 특화전등	5,440,000	544,000	1,088,000	3,808,000	
74A	중문	현관	1,950,000	195,000	390,000	1,365,000	
	포세린 바닥타일	거실, 주방	1,280,000	128,000	256,000	896,000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1,290,000	129,000	258,000	903,000	
	마감업그레이드	시트패널+간접조명+우물천장 간접조명 +거실, 안방, 침실, 주방, 욕실 특화전등	5,780,000	578,000	1,156,000	4,046,000	
74B	중문	현관	1,950,000	195,000	390,000	1,365,000	

	포세린 바닥타일	거실, 주방	1,290,000	129,000	258,000	903,000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1,550,000	155,000	310,000	1,085,000	
	마감업그레이드	시트패널+간접조명+우물천장 간접조명 +거실, 안방, 침실, 주방, 욕실 특화전등	5,650,000	565,000	1,130,000	3,955,000	
84A	중문	현관	1,950,000	195,000	390,000	1,365,000	
	포세린 바닥타일	거실, 주방	1,360,000	136,000	272,000	952,000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1,410,000	141,000	282,000	987,000	
	마감업그레이드	시트패널+간접조명+우물천장 간접조명 +거실, 안방, 침실, 주방, 욕실 특화전등	6,130,000	613,000	1,226,000	4,291,000	
	공간옵션 주방옵션1	알파룸(슬라이딩도어)+복도팬트리+주방장식장 +주방간접우물천장+식탁각도조절등	4,030,000	403,000	806,000	2,821,000	
	공간옵션 주방옵션2	홈바+주방팬트리+주방간접우물천장 +식탁각도조절등	5,860,000	586,000	1,172,000	4,102,000	
84B	중문	현관	1,950,000	195,000	390,000	1,365,000	
	포세린 바닥타일	거실, 주방	1,430,000	143,000	286,000	1,001,000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1,680,000	168,000	336,000	1,176,000	
	마감업그레이드	시트패널+간접조명+우물천장 간접조명 +거실, 안방, 침실, 주방, 욕실 특화전등	6,390,000	639,000	1,278,000	4,473,000	
	공간옵션 침실1	안방	3,650,000	365,000	730,000	2,555,000	
99	중문	현관	1,950,000	195,000	390,000	1,365,000	
	포세린 바닥타일	거실, 주방	1,520,000	152,000	304,000	1,064,000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1,630,000	163,000	326,000	1,141,000	
	마감업그레이드	시트패널+간접조명+우물천장 간접조명 +거실, 안방, 침실, 주방, 욕실 특화전등	6,940,000	694,000	1,388,000	4,858,000	
	공간옵션 주방옵션1	알파룸(슬라이딩도어)+복도팬트리+주방장식장 +주방간접우물천장+식탁각도조절등	3,990,000	399,000	798,000	2,793,000	
	공간옵션 주방옵션2	홈바+주방팬트리+주방간접우물천장 +식탁각도조절등	5,840,000	584,000	1,168,000	4,088,000	
	공간옵션 침실1	안방	5,040,000	504,000	1,008,000	3,528,000	

※ 포세린타일 바닥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포세린타일 바닥 시공은 거실+주방이며, 미선택 시 침실과 동일한 마감재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스타일옵션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스타일 옵션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스타일 옵션 납부계좌	국민은행	006037-04-006000	지에스건설(주)

※ 상기 계좌는 스타일 옵션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 제출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상기 계좌는 스타일 옵션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 바람.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스타일 옵션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 시스클라인) 공사비 납부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 시스클라인은 시공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주)에서 계약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함.

▣ 가전 옵션 품목(유상옵션)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59A/B/C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36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2	4,61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970,000	
74A/B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50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2	4,86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050,000	
74B	선택4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7,680,000	
84A/B · 99	선택1	2대	거실, 침실1	3,52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2	4,870,000	
	선택3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500,000	
84A · 99	선택4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7,69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타입별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선택안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시스클라인	자이에스앤디㈜	선택1	2대	거실&주방	1,420,000	
		선택2		거실&침실1	1,585,000	74B 알파룸 제외
		선택3	3대	거실&주방, 침실1	2,295,000	84A·99 침실4 공간옵션 진행으로 제외
		선택4	5대	거실&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045,000	

※ 시스클라인은 선택 옵션에 따라 세대 내 공기 청정화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쿨러, 감지기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공기청정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 침실은 공간이 협소하여 천장형공기청정기가 세로로 설치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선택 시 거실 컨트롤러 1대로 거실 및 주방 통합제어 가능하며, 거실 컨트롤러는 기본 제공되는 품목임.

※ 침실 선택시 매립형컨트롤러(난방 조절 기능포함, 난방 컨트롤러 대체)를 침실별 각 1대씩 제공함.

■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빌트인 냉장고	LG전자	S711SI24B	5,750,000	홈바형
		S691SI34BS2	7,650,000	디스펜서형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	1,450,000	
광파오븐		MZ385EBTD	540,000	하부 워밍드로워포함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가전 옵션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유상옵션 납부계좌	신한은행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자이에스앤디(주)

※ 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시스클라인) 공사비 납부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시스클라인은 시공전문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주)에서 계약체결 및 시공 예정으로 계좌가 상이함.

■ 추가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 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함.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계약체결 전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VI. 유의사항

■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공통	일반사항	공통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선별	• 소방 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공통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통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인·허가	공통	• 각종 홍보물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변경) 도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공통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공개공지, 도로, 차도,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통	•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초등학생은 인지초등학교 배치 예정입니다.** • **중학생은 4학교군에 분산배치 가능합니다.** • **고등학생은 단일 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2학군) 내 분산배치 가능합니다.** • **관할교육청 및 시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 배정학교, 시기등은 해당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공통	• 단지 경계는 대로 및 중로, 도시철도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사업의 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일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공통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단지 북측에 아파트 주동과 인접하여 지상으로 지하철 3호선이 운행하며, 원대역이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대구염색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단지 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 배기구가 설치되며 아파트용은 102, 106동에, 오피스텔용은 301동 옥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공통	• 본 아파트 내에는「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대구광역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공통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동별 현황	공통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공통	• 101동 전면 및 301동(오피스텔) 후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일부 동·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공통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별	• 103, 105동에 인접하여 어린이공원이 위치하여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별	• 104동 인근에는 자이안센터용 장애인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 및 계단이 설치됩니다. 104동 지하1층에는 골프연습장, 입주민회의실 등 부대시설이 있어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별	• 101, 103, 104, 106동과 인접하여 지상층에 게스트하우스, 독서실이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별	• 110, 111, 112, 113동의 저층 및 109동 후면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냄새 발생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9동 후면 상가는 2층이며, 옥탑이 있어 저층세대의 조망간섭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별	• 104동 지상 1층에 관리사무소가, 103동 전면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설치됩니다.
		선별	• 101, 102, 103, 104, 105, 110동과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설치되며 약 5m 높이에 지붕이 설치되어 조망권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별	• 110동 전면, 112동 후면 및 107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이 설치되며, 112동은 주차장 사이가 협소할 수 있습니다.
		선별	• 108, 110동에 인접하여 소공원이 있어 소음 발생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별	• 111동 및 301동(오피스텔)에 인접하여 공개공지가 설치됩니다. 공개공지는 단지외부인에게 공개되는 시설임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선별	• 104동 3호라인 전면 지상층, 105동 4호라인 전면 지상층, 109동 6호라인 측벽에 지하주차장용 채광 및 환기창이 설치되어 조망권 등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별	• **102동 1호라인, 107동 1호라인은 거실에서의 조망권확보를 위해 거실 아트월위치를 모델하우스와 반대로 거실/침실2 사이 벽체에 설치 예정이니 해당 동호의 세대는 확인바랍니다.**
		선별	• 101동 전면에 통학버스정차대(어린이안전보호구역) 및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되며, 106동 후면에도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됩니다.
		선별	• 113동(96세대)는 임대주택용으로 건설되며 추후 관련기관을 통하여 임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단지계획 (설계,디자인,마감)	공통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방공호 및 대공포진지 군사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인접지역 주민의 원대역 이용 편의를 위해 주출입구와 원대역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합니다.**
		공통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통	• 소방관청 협의에 따라 1층 조경공간에 안전매트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유아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아파트의 경비실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각각 1개소가, 오피스텔은 동 후면에 1개소가 설치됩니다.
		공통	• 301동은 오피스텔이며, 출입구 및 주차장은 구분되어 있으나 지상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공통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 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
	외관계획	공통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 또는 개구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 현장시공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도장재 또는 기타 마감재로 마감되며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와 도장재 또는 기타마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별	• 단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문주가 설치되며, 인접한 101, 102, 113, 105, 110동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및 야간 빛공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별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02, 103, 105, 108, 301동 및 그 주변동은 야간 빛공해로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	• **측벽의 특화 위치, 디자인 및 마감계획은 인허가, 현장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선별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통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공통	•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분리수거장, 재활용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	• 주민공동시설 내 피트니스센터, GX룸 및 경로당에서 입주 전후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일정 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공통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별	• 주민공동시설 샤워실에 따른 급탕용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104동 설치예정이나 실시설계시 변동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소음, 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공통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 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공통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공통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111동 측벽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통	• 빗물 재활용을 위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되어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공통	• 지하주차장, 필로티 등 배관 동파가 우려되는 부분에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공통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통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단지 간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주차장	공통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하1층 유효천장고는 2.7m, 지하2층은 2.3m입니다.
		공통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990대, 오피스텔 172대, 근린생활시설 60대(지상 45대 포함)로 총 2,222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통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동별로 인접 주차대수는 상이할 수 있으며, 동출입구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지하2층 총 21개소(급속1, 완속 20)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	•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3개소입니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공통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통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통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지하1층 총2개소(급속 1, 완속 1)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 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별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해당 지상 및 지하주차장를 이용해야 합니다.
		선별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은 분리되어 있고, 지상주차장은 110동 후면, 112동 후면에 있으며 관리주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	공통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1층 세대는 2,400mm)
		공통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공통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공통	• 유상옵션 선택 시 적용되는 주방 우물천장의 위치 및 크기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선별	• 84B형 세탁기 설치공간은 침실1(안방) 전면 발코니에 있어 야간 사용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별	• 다락세대는 침실 또는 팬트리 등에 계단이 설치되며 평면별로 상이합니다. 계단이 설치되는 실은 기준층보다 축소되거나 삭제되며, 계단하부공간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락바닥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옥상으로의 출입이 불가합니다. 천장은 경사로 계획되어 위치별 높이가 상이합니다. 다락 이용시 경사지붕으로 인하여 천장일부에 머리가 닿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공통	• 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공통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통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단위세대의 피난방법은 발코니를 통하여 옆세대로 이동하거나, 하향식피난구를 통하여 아랫세대로의 피난, 2가지 방법이 있으며 평형마다 상이하니 확인바랍니다.
		공통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1층 및 필로티 상부 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공통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공통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외부창호는 유리난간형일체형창호 및 입면분할이중창(별도의 철재 난간이 없는 일체형 타입)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 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공통	• 외부창호 중 거실 및 안방의 창호는 입면분할이중창에서 유리난간일체형으로 경미한설계변경 처리 예정입니다. 유리난간일체형 창호의 고정창부분은 별도의 난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개폐부분에

			는 접합유리 난간이 설치됩니다.
	옥외공간 (테라스)	선별	• 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 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선별	•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빗물 배수를 위해 경사 시공됨에 따라 마감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별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별	•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별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 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선별	• 옥외공간에는 조경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구 및 마감재	공통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가 설치되는 벽, 바닥, 천장 부위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가구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공통	• 거실 아트월은 동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통	• 거실아트월 타일은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공통	• 현관 중문(유상옵션)은 주택형별 사양(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별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 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선별	• 세대 내 적용되는 가구의 패턴글라스는 유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선별	• 102동 1호라인, 107동 1호라인은 거실에서의 조망권확보를 위해 거실 아트월위치를 모델하우스와 반대로 거실/침실2 사이 벽체에 설치 예정이니 해당 동호의 세대는 확인바랍니다.
	전기기계설비	공통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통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공통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통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통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공통	•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 자이 원패스카드는 세대당 2매가 제공되며, 카드 디자인은 입주 시 확정됩니다.
		공통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선별	• 세대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별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견본주택**	공통	• 견본주택 내의 전시조명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됩니다.
		공통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통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공통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공통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단위세대와 같은 타입일지라도, 실제 세대의 피난 방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지정 개시일 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별도통보 예정임.

■ 입주예정일 : 2023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됨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이상	지하1층 2.7M이상, 지하2층 2.3M이상	2.7M 이상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분	등급
내진설계 중요도 Ⅰ	Ⅶ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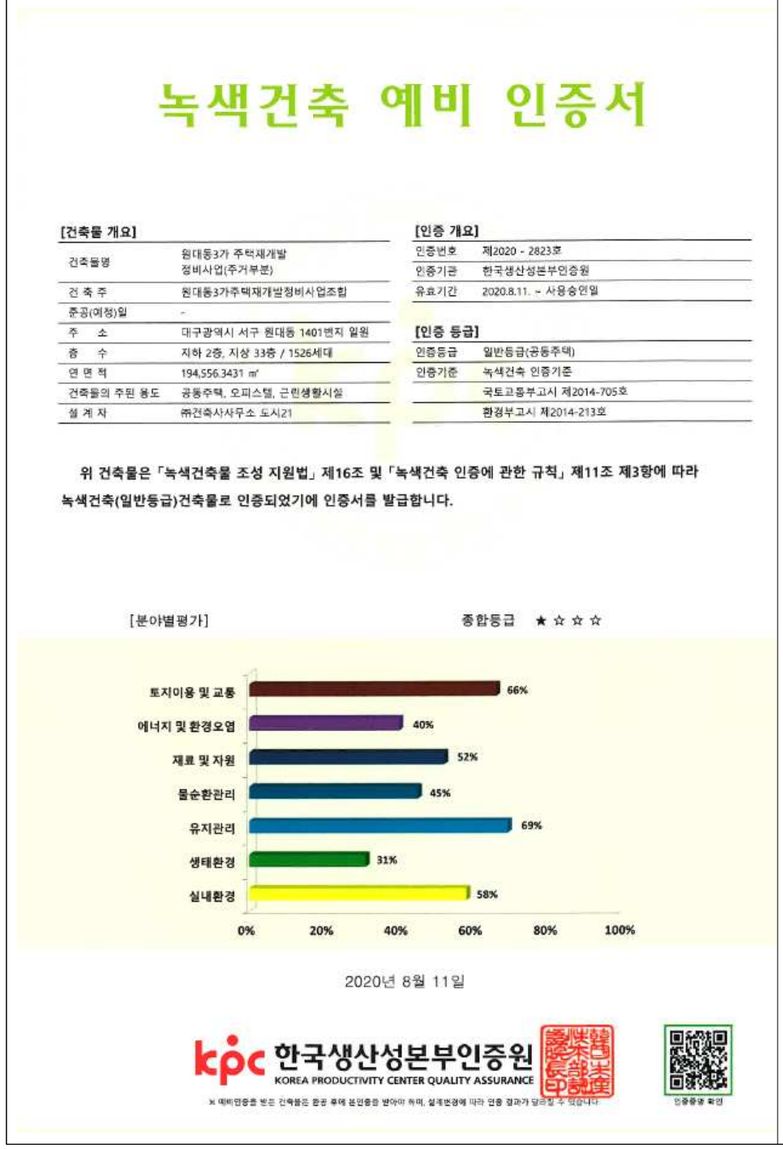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KS규격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변압기(표준소비효율 만족) 설치
	간선 및 동력설치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치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주택법」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주거부분)
건 축 주	원대동3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1401번지 일원
층 수	지하 2층, 지상 33층 / 1526세대
연 면 적	194,556.3431 ㎡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도시21

[인증 개요]

인증번호	제2020 - 2823호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0.8.11.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2020년 8월 11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 확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주거부분)
2. 신 청 자 : 원대동3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1401번지 일원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해당없음
	비내력벽 재사용	해당없음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정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해당없음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제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자재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화 절감	우수부화 절감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 이용	★★★
	중수도 설치	해당없음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 원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해당없음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시설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해당없음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 중심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마.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08월 11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감리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4,342,427,000 (부가가치세 별도)	
전기감리	㈜남양기술감리단	802,908,999 (부가가치세 포함)	
정보통신	덕원기술단	24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소방감리		96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328,650,000,000**	**제01212020-101-00041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1.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 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 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1.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 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 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2.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의 양도 등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회사
상호	원대동3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고성로 36-1, 2층(비산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법인등록번호	171871-0005314	110111-0002694

■ 홈페이지 : http://sdgcentral-xi.co.kr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35-4 서대구센트럴자이 분양사무소 (TEL. 1661-5523)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8월 28일 오픈 예정, http://sdgcentral-xi.co.kr) 및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분양문의(1661-5523)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2020.08.28(금) 견본주택 오픈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일: 2020.09.07.(월) I 1순위 청약일 : 2020.09.08(화) I 2순위 청약일: 2020.09.09(수) I 당첨자발표일: 2020.09.15(화)

총 1,526세대 중 일반분양 1,071세대

I 전용 I 59A, 59B, 59C, 74A, 74B, 84A, 84B, 99

분양문의 1661-5523

■ 견본주택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35-4